



## 긴급입찰 요청 사유서

### □ 구매개요

- 건 명 : 무궁화21호 정기적 수리(선체 · 기관) 용역
- 목 적 : 『어선법』 제4장(어선의 검사), 『선박안전법』 제2장(선박의 검사)에 의거 선박검사수검에 따라 효율적으로 무궁화21호 정기적 수리(선체 · 기관) 및 검사수검 업무를 추진하고, 어선들의 조업활동 감시와 원활한 지도 · 단속업무를 수행하고자함.
  - \* 선박검사 미수검시 운항불가 : 어선법 제37조(다른 법령의 준용), 선박안전법 제17조(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),
- 사업기간 : '20. 2. 8. ~ 3. 16.
- 소요예산 : 117,462,460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근거 법률
  - 『국가계약법 시행령』 제35조제4항제2호
  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 -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### □ 긴급입찰 요청 사유

- 무궁화21호의 주요업무인 국내 · 외 어선들의 조업활동 감시 · 지도 ·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검사증서 발행에 필요한 선박 수리 및 선박검사수검이 필요함.
- 연초에 수립된 모든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명령 계획과 정기적 수리 일정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계획과 연계되어 있음.
- 따라서, 본 계약은 국가사업(출동, 수리, 선박검사)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『국가계약법 시행령』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긴급입찰을 요청함.

동해어업관리단

